##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1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김병기 · 이병진

박해철 • 이광희 • 임호선

권향엽 • 안호영 • 박희승

윤준병·강준현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 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, 구역, 수심, 체장,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 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.

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 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 이 걸린 상황임.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

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	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		
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	<del></del> ( ) ①		
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			
는 아니 된다.	<b>.</b>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2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		
	제1항에 따른 포획・채취가		
	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		
	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		
<u>2.</u> (생 략)	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